

제 1 회 이 사 회 회 의 록

일 시 : 1991년 1월 10일 오후 4시

장 소 : 한국고분자학회

참석자 : 조의환, 김은영, 김정엽, 신영조, 이부섭,
김성철, 김봉식, 김완영, 성용길, 여종기,
이해방, 장용균, 최철림, 조용장(위임),
변재황(위임), 김광웅(위임)

토의내용

1. 정관 개정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주요내용 :

- 회장 및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함
- 수석부회장, 총무이사직을 신설하고 수석부회장, 총무이사가 차기 회장, 전무이사직을 승계토록하여 1년 단임으로 인한 학회 사무의 연계성을 보완함

정관개정추진 : 1990년 제2회 이사회(1990. 10. 11) 의결 및, 1990년 추계총회 양해사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후 과기처에 정관개정 신청을 한후 1991년 춘계총회에서 추인 받도록 함

2. 제규정의 개정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주요내용 :

- 임원 임기가 1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재무위원회, 산학협동위원회, 용어제정위원회, 편집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함

- 학술위원회 규정을 폐지함

- 편집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학술편집위원회와 기술편집위원회를 두고 논문심사규정을 개정하여 학술위원장의 업무를 학술편집위원장에게 이관함

- 간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총무간사를 부간사장으로 변경하며 기획간사 1인을 증원하고 간사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함

- 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임기4년),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임기2년), 지부장 및 분회장(임기2년), 평의원(임기2년)의 임기는 변동없음

3. 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임기만료된 자문위원의 재선출과 신규 자문위원 선출

자문위원장 : 심정섭(재선출)

자 문 위 원 : 김원택, 정기현, 김점식, 변형직,
최삼권(이상 재선출)
안태완, 김재문(이상 신규 선출)

4. 제위원회 위원장 선출

기금관리위원장 : 안태완

재 무 위 원 장 : 이부섭

용어제정위원장 : 김영하

학술편집위원장 : 성용길

기술편집위원장 : 김성철

산학협동위원장 : 이해방

교 육 위 원 장 : 조원재

정 관 개 정 안

개 정 항 목	원 안	개 정 안
제12조	회장 1인 <u>부회장 4인</u> 전무이사 1인 이사 10인 이상 20인 이내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포함) 감사 2인	회장 1인 <u>수석부회장 1인</u> <u>부회장 3인</u> 전무이사 1인 <u>총무이사 1인</u> 이사 10인 이상 20인 이내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u>총무이사</u> 포함) 감사 2인
제13조	(1) 임원의 임기는 <u>2년</u> 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u>1년</u>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u>다만 회장직과 수석부회장직은 각각 연임할 수 없다.</u>
제14조	(1) 임원은 평의원회의 제정으로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과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과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u>회장직은 전임기의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u> <u>전무이사직은 전임기의 총무이사가 승계한다.</u> (2) <u>회장, 전무이사를 제외한</u> 임원은 평의원회의 제정으로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과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3)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과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회장의 유고시에는 <u>이사회에서 선출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회장의 유고시에는 <u>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제37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u>내외경제신문</u>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본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u>일간지</u>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본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한국고분자학회 규정 개정안

개 정 항 목	원 안	개 정 안
교육위원회규정 7조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u>2년</u> 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u>다음해 12월 31일</u> 에 만료된다.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u>1년</u> 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u>12월 31일</u> 에 만료된다.
학술위원회규정		모두 삭제
재무위원회규정 7조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u>2년</u> 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u>다음해 12월 31일</u> 에 만료된다.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u>1년</u> 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u>12월 31일</u> 에 만료된다.

개 정 항 목	원 안	개 정 안
산학협동위원회 규정 7조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u>2년</u> 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u>다음해 12월 31일</u> 에 만료된다.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u>1년</u> 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u>12월 31일</u> 에 만료된다.
용어제정위원회 규정 7조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u>2년</u> 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u>다음해 12월 31일</u> 에 만료된다.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u>1년</u> 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u>12월 31일</u> 에 만료된다.
학 회 포 상 규 정 6조 7조	학술상 및 기술상 후보자는 시상 실시 <u>3개월 전</u> 까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회에 제출한다. 회장은 포상심사위원장 1인과 9인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포상심사위원회는 <u>시상 실시 1개월 전</u> 까지 수상자를 심의 결정한다.	학술상 및 기술상 후보자는 시상 실시 <u>1개월 전</u> 까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회에 제출한다. 회장은 포상심사위원장 1인과 9인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심의 결정한다.
편집위원회규정	2조: 위원회는 다음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지 및 기타도서의 간행 2. 논문 투고 및 심사에 따르는 제반업무 3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20명 내외 4조: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5조: 부위원장 및 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6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조: 편집위원회에는 <u>학술편집위원회와 기술편집위원회</u> 를 둔다. 3조: 학술편집위원회는 다음사업을 수행한다. 1. 폴리머지 간행 2. 기타 학술관련도서의 발간 4조: 기술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사업을 수행한다. 1. 고분자과학과기술지 간행 2. 기타 기술관련도서의 발간 5조: 학술 및 기술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u>각</u> 1명 2. 부위원장 <u>각</u> 1명 3. 위원 <u>각</u> 10명 내외 6조: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의 위촉한다. 7조: <u>학술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은 학술 편집간사로, 그리고 기술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술편집간사로 보한다.</u> 8조: 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9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u>실무를</u> 담당한다.
편집위원회규정	7조: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u>다음해 12월 31일</u> 에 만료된다.	10조: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 1일 시작하여 <u>12월 31일</u> 에 만료된다.

개 정 항 목	원 안	개 정 안
논문 투 고 규 정 13항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그림의 축을 표기하는데 있어서 $L \times 10^3m$ 와 같은 표기는 뜻이 분명치 않으므로 $L(10^3m)$ 또는 $L(km)$ 등으로 표기한다.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u>이후 삭제</u>
논문 심 사 규 정 2조	논문의 심사는 2명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정하며, 그 명단은 발표하지 않는다.	논문의 심사는 2명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u>학술편집위원회</u> 에서 선정하며, 그 명단은 발표하지 않는다.
3조	심사결과는 “채택가”(무수정, 수정필요)와 “채택불가”로 판정한다. 1. “채택가”중 “무수정”으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없이 채택한다. 2. “채택가”중 “수정필요”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정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 보충하거나 저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원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받는다.	심사결과는 “채택가”(무수정, 수정후채택), “수정후 재심”과 “채택불가”로 판정한다. 1. “채택가”중 “무수정”으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없이 채택한다. 2. “채택가”중 “수정후채택”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정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 보충한 후 재심없이 채택한다. 3. “수정후재심”으로 판단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정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 보충한 후 원심사위원에게 재심을 받는다.
7조	논문이 논문투고규정에 맞지 않다고 편집위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논문이 논문투고규정에 맞지 않다고 <u>학술편집위원회</u> 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9조	심사위원 중 1명이 “채택가” 다른 1명이 “채택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u>학술위원장</u> 에게 제1, 2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제3심사위원의 선정을 의뢰한다. 이 경우 제3심사위원이 “채택가”나 “채택불가”로 판정하면 이 판정에 따라 논문을 처리한다.	심사위원 중 1명이 “채택가” 다른 1명이 “채택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u>학술편집위원장</u> 은 제1, 2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제3심사위원의 선정을 의뢰한다. 이 경우 제3심사위원이 “채택가”나 “채택불가”로 판정하면 이 판정에 따라 논문을 처리한다.
간사위원회규정 3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간사장(위원장) 1명 2. <u>총무간사(부위원장) 1명</u> 3. 재무간사 1명 4. 편집간사 2명 5. <u>총무간사 2명</u> 6. 조직간사 2명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간사장(위원장) 1명 2. <u>부간사장(부위원장) 1명</u> 3. 재무간사 1명 4. 편집간사 2명 5. <u>기획간사 3명</u> 6. 조직간사 2명
7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u>다음해 12월 31일에</u> 만료된다.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u>12월 31일에</u> 만료된다.